

특 허 협 력 조 약
(PATENT COOPERATION TREATY)

발신: 수리관청

수신: 김종해 대한민국 10129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16 101동701호

PCT

우선권주장 보정요구서
및/또는 우선권회복 신청 가능성에
관한 통지서

(PCT 규칙 4.10, 26bis.1, 26bis.2(a) 및 (b), 26bis.3)

발송일 (일/월/년)	2018년 09월 28일 (28.09.2018)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SOLARCELL		답변기간 아래 1. 및 2. 참조
국제출원번호 PCT/KR2018/007699	국제출원일 (일/월/년) 2018년 07월 06일 (06.07.2018)	우선일 (일/월/년)
출원인 김종해 등		

1. 출원인은, 아래 기재된 기간 이내에, 수리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부록A에 기재된 우선권주장에
있어서의 흠결을 보정할 것을 통지받습니다.

이 요구서에 대한 답변기간(규칙 26조의2.1(a)):

- 우선일부터 1년 4월(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
부터 1년 4월과 우선일부터 1년 4월중 먼저 만료되는 날)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
- (최초의) 우선일이 (최초의)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, 변경된
(최초의) 우선일부터 16월 이내.

규정된 기간 이내에 본 요구서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, PCT절차상 우선권주장은 무효한 것으로
간주됩니다(규칙 26조의2.2(b)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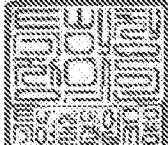
2. 상기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이 우선권기간(priority period) 만료 후이나, 동 만료일부터 2월 이내입니다.
출원인은, 아래 기재된 기간 이내에, 부록B에 기재된 우선권회복 신청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할 수 있음을
통지받습니다.

우선권회복 신청기간(규칙 26조의2.3(e)):

- 우선권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월 이내

3. 우선권주장이 2건 이상인 경우, 본 통지서는 다음 우선권주장에 관련됩니다:

본 요구서/통지서의 사본은 국제사무국에 송부됩니다.

수리관청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(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: +82 42 472 3473	특허청장 전화번호: 82-42-481-8755	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이 우선권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습니다.

1. 규칙 4.10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.

a. 국내출원

- 선출원일자가 기재되지 않음.
- 기재된 선출원일자가 국제출원일 전 12월의 기간내가 아님.¹
- 선출원번호가 기재되지 않음.²
-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선국내출원이 수리된 국가명이 기재되지 않음.
- 기재된 국가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이 아님.

b. 지역출원

- 선출원일자가 기재되지 않음.
- 기재된 선출원일자가 국제출원일전 12월의 기간내가 아님.¹
- 선출원번호가 기재되지 않음.²
- 당해 지역특허조약에 의한 지역특허관청이 기재되지 않음.
- 지역특허관청으로 기재된 관청이 지역특허를 허용하지 않음.
- ARIPO 출원과 관련된 우선권주장이 선출원으로 보호를받고자하는 최소 1개국의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을 기재하지 않음.

c. 국제출원

- 선출원일자가 기재되지 않음.
- 기재된 선출원일자가 국제출원일전 12월의 기간내가 아님.¹
- 선출원번호가 기재되지 않음.²
- 수리관청이 기재되지 않음.

2. 우선권서류의 기재사항과 불일치²

a. 선출원일자의 불일치:

출원서 기재: KR 2018년 03월 20일 (20.03.2018)10-2018-0031923

우선권서류 기재: KR 2017년 08월 28일 (28.08.2017)10-2018-0031923

b. 선출원번호의 불일치:

출원서 기재:

우선권서류 기재:

c.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출원이 수리된 국가명의 불일치:

출원서 기재:

우선권서류 기재:

d. 당해 지역특허조약에 의한 지역특허관청의 불일치:

출원서 기재:

우선권서류 기재:

e. 국제출원 수리관청의 불일치:

출원서 기재:

우선권서류 기재:

¹ 국제출원일이 우선권기간(priority period) 만료 후이나 동 만료일부터 2월 이내인 경우, 우선권주장은 무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(규칙 26조의2.2(c)(iii)).

² 상기 흠결이 본 요구서에 대응하여 보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우선권주장은 무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(규칙 26조의2.2(c)(i) 및 (ii)).